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조 례

제145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2
 제1457호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
 제1458호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7

● 고 시

제2019-16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10

● 공 고

제2019-90호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1
 제2019-102호 :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12
 [별첨 :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별지서식]
 제2019-10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
 릿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조 례

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2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●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56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재활용품”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.
- 2. “재활용품 수집인”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활용품 수집인(이하 “수집인”이라 한다)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

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관내 재활용품의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
2. 수집인 가구의 소득, 재산 상태
3.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

제6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활용품 수집 능력향상을 위해 손수레, 방한의류, 야광조끼, 반사경 등의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)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-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 (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제3조)
-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. (제4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규정(제5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장비 등 장비 지원 규정(제6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규정(제7조)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2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●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57호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“제134조”를 “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“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실시와”를 “정례회에서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심의)	제5조(심의)
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① -----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----- -----.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② -----정례회에서는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-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여 당해 연도 정책이나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
- 다음해 예산안 편성 시 행정사무감사결과가 반영토록 하여 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·의결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·의결하도록 변경함. (제5조제1항 및 제2항)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2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●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58호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“기획재정국”을 “경제친화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“행정관리국”을 “행정지원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조제2항제3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생활안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“복지환경국”을 “시민친화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“도시관리국”을 “생활복지친화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“건설교통국”을 “생활도시친화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행정·보건위원회 가. (생략) 나. <u>기획재정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<u>행정관리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(생략) <신 설> 3. 복지·건설위원회 <신 설> 나. <u>복지환경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<u>도시관리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<u>건설교통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경제친화국</u> ----- 다. <u>행정지원국</u> -----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<u>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3. 복지·건설위원회 가. <u>생활안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나. <u>시민친화국</u> ----- 다. <u>생활복지친화국</u> ----- 라. <u>생활도시친화국</u> -----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제2항의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함.

2. 행정·보건위원회

- 가. 현행과 동일
- 나. 경제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현행과 동일
- 마.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(신설)

3. 복지·건설위원회

- 가. 생활안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(신설)
- 나. 시민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생활복지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생활도시친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16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 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13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신당동 432-266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 34	2019.02.13.	동호로11바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남대문로5가 549 외 1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 21	2019.02.13.	후암로6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후암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90호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)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공고의 명칭 :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
- 2. 공 고 기 간 : 2019. 2. 13. ~ 2018. 2. 28.
- 3. 공 고 대 상

- 자동차등록번호 : 05거44**외 3대
- 소 유 자 명 : 비*****코리아(주)외 3대
- 운행정지 명령일자 : 2019. 1. 1. ~ 1. 31.
- 운행정지 사유 : 소유자 요청

4.공 고 내 용

-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(02-3396-624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운행정지 자동차 현황

연번	운행정지상태	자동차등록번호	소유자명	소유자등록번호	사용본거지주소
1	등록	05거4428	비*****코리아(주)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
2	등록	서울82바6805	성**(주)	11011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
3	해제	44허8198	(주)렌***	135811-0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
4	해제	71로8053	조**	540610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102호

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조직개편(2019. 1. 1자)에 따라 부서에서 사용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을 폐기 및 등록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2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
-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

2. 폐기공인

- 안전치수와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안전치수와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자치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자치행정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교육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교육체육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여성가족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여성가족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일자리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일자리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시장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시장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총무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총무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공보실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공보실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위생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건강도시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건강도시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
- 전산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전산정보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도시디자인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도시디자인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
3. 등록공인

가. 규 격

- 재무관, 지출원 : 2.0cm × 2.0cm
- 일상경비출납원, 분임물품출납원 : 1.8cm × 1.8cm

나. 내 역

- 생활안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생활안전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동정부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동정부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교육아동청소년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교육아동청소년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여성보육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여성보육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도심산업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도심산업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전통시장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전통시장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행정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홍보전산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홍보전산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보건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보건위생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시민건강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시민건강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치수와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치수와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사회적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사회적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소공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소공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
- 회현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회현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명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명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필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필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장충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장충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광희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광희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을지로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을지로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신당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신당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다산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다산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약수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약수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청구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청구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청구동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신당5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신당5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동화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동화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황학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황학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- 중림동 재무관 공인명 및 인영
- 중림동 지출원 공인명 및 인영

다. 사용일자 : 2019. 1. 1.

라. 사용용도 : 예산 집행 및 물품출납 시 사용

[별첨 : 별지서식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107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9년 2월 13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 이용자의 활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주차장의 공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계약(50대 이상)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60%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영주차장의 요금(별표1)
 -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단체계약(20대이상) 체결시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60%범위 안에서 조정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264, FAX: 3396-8873, 메일: rokaff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[첨부1]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란의 제4호에 “50%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”를 “50%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, 1급지 공영노외 주차장 단체계약(50대 이상) 체결시에는 60%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첨부2]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【별표1】 - 비 고- 1 ~ 3. (생략)</p> <p>4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%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【별표1】 - 비 고- 1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으며,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 단체계약(50대 이상) 체결시에는 60%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p>